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14 - 1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 3.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공립작은도서관 이용규정, 회원관리규정, 자료관리규정,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체별 역할을 규정(안 제5조)
- 나. 이용시간, 휴관일 등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6~7조)
- 다.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12조)
- 라. 열람, 대출 등 자료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21조)
- 마. 회원 가입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29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모래내로 334 서대문구청 제4별관 교육지원과 <우편번호 : 120-847>, 전화 : 02-330-8191, FAX : 02-330-8624, E-mail : ihj123@s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 「입법예고」 에 규정안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